

해외건설협회와 가주한인건설협회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와 가주한인건설협회(이하 '가주건협', 해건협과 함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수주 확대 지원과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수주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 기관간 정보교류 등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해 수시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협력사항을 발굴 및 모니터링 한다.

- ①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및 수주 관련 정보 교류 등
 - 해건협은 가주건협의 요청시 회원사의 미국 내 관심 프로젝트 및 수주 정보를 가주건협에 제공한다.
 - 가주건협은 해건협의 요청시 미국 시장·발주정보 등 수주관련 정보를 해건협에 제공하고, 진출 관심 기업 앞 친설팅(V/멘더리스트 제공, 범무/세무법인 소개 등) 서비스 제공한다.
- ②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 양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및 수주지원단에 초청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 양 기관이 상대방의 사무소 소재지에 출장/파견 시 사무실, 회의실 이용 등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 양 기관의 업무연수과정에 상대방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③ 기타 상호 협력사항
 - 양 기관은 상기 협력사항 이외에도 업무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협의 책임자)

본 협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기관별로 협의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기한)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기타)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제2조(협력내용)에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7월 2일

가주 한인 건설 협회
회장 정재경

해외건설 협회
회장 박기풍



가주 한인 건설 협회
CA KOREAN CONSTRUCTION ASSOCIATION
SINCE 1982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ICAK